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자 : 조정훈·김용태·최수진  
박충권·서천호·김미애  
김장겸·서지영·임종득  
권영세·김기현·김대식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,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

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2항 중 “하며,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4호 중 “자료의”를 “자료(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자료는 제외한다)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